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8월26일 김봉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 (안13조)

4. 검토의견

☐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,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함에 있어

위원의 이해(利害)와 충돌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1.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